

청주지방법원 2018. 5. 29 선고 2017가단1321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

피 고 A

판결 선고 2018. 5. 29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2. 11. 19.자 접수 제125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7. 11. 14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

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진행 중에 있는데,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 앞으로
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2. 11. 19.자 접수 제125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원인채권은
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, 말소되어야 한다.

2.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 임병렬

별지